

2025 공존과 성장, **희망의경남!**

2026년 도 자체 보조사업 지침 (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)



경 상 남 도
(여성가족과)

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 사업

I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상대적 빈곤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부자에 대하여 출산 전후 요양비 및 생활보조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

'미혼한부모'라 함은 결혼(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)을 하지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, 홀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으며 **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사례가 없는 자**

□ 근거법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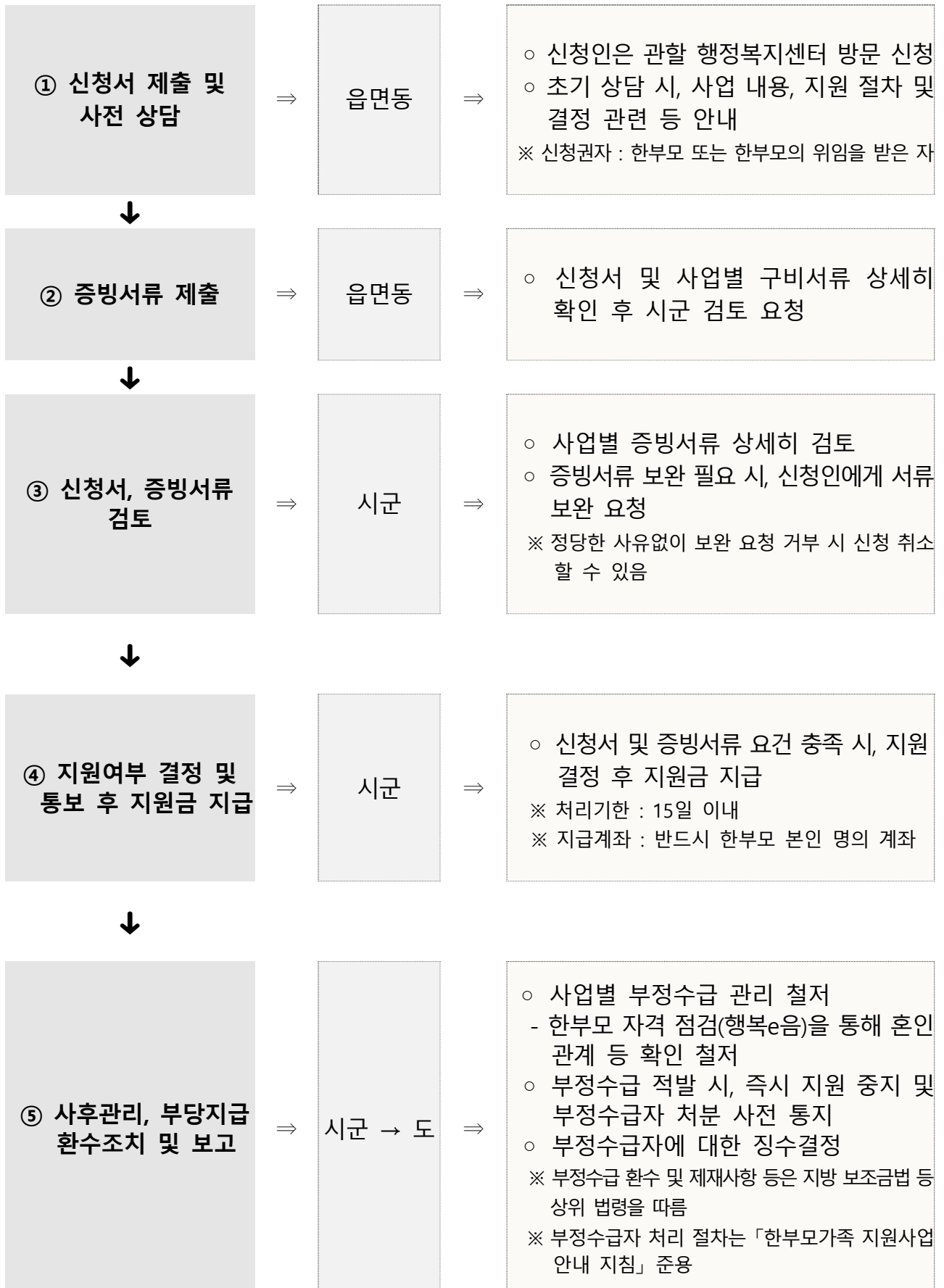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,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 제7조

□ 2026년 사업계획

- 사업비 : 572백만원(도비 172, 시군비 400)
 - ▶ 부담비율 : 도비 30%, 시군비 70%
 - ▶ 2026년 사업량 및 사업비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사업주체 : 18개 시장·군수
- 지원대상 : 도내 미혼 한부모가족 세대
- 사업내용

사업명	지원대상	지원내용	비고
①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※ 기준중위소득 제한없음	출산예정일 4주전, 산후 6개월의 미혼모,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	의료비 및 출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(미혼모부자거점기관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)	사업 간 예산전용 가능
②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※ 기준중위소득 60%이하	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	자녀 1인당 월5만원 정액 지원	

II. 업무 처리 체계



Ⅲ. 세부 사업내용

① 미혼모 산전산후 영양비 지원

- 지원대상 : 출산예정일 4주전, 산후 6개월의 미혼모,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
(도내거주 6개월 확인)
 - ※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(낙태 제외)로 미혼모의 영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
- 중복지원제외 ※ 소득기준 제한 없음
 -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
 -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
- 지원내용
 - 지원금액 : 1인당 1백만원
 - 의료비, 출산용품 구입,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
 - ※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영수증 첨부 불필요
- 신청방법 : 병원 등에서 발급한 임신사실 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, 출생신고서 등을 해당 시군(읍면동)에 제출
- 지급방법 : 임신·출산 사실 등 확인 후 본인 계좌입금

②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

- 지원대상 : 만 18세 미만(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)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
- 중복지원제외 : 해당없음
- 지원내용 :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
- 지급방법 : 계좌입금(매월 20일 기준)
 - 전입자는 반드시 전 거주지 수혜여부 확인 후 지원, 신규자는 신규 신청일(급여개시일)기준으로 지급하고 중도탈락자는 해당 월까지 지급
 - 신규자는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그 달분 전액 지급, 16일 이후일 경우 그 달분의 50% 지급
 - 전입자의 경우 15일 이전은 신 거주지에서 지급하고 16일 이후는 구 거주지에서 지급
 -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 중지
 - ※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의거 지원을 받는 저소득 미혼한 부모도 지원 가능

Ⅲ. 기타사항

- 시장·군수는 반기별 집행실적을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실적 및 부정수급 결과보고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
-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여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, 기타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사업비 집행 등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, 보조금 교부 목적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도지사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
-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기본 목적 및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 안내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
- 신규 대상자 발굴 및 지원자격을 갖춘 자가 보호대상에서 누락 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 및 사업내용 홍보 철저, 신청인에게 추가비용 본인 부담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해 충분히 안내
- 신청서, 구비서류, 조사서 등 민원서류는 반드시 관리자의 결재를 받은 후 업무 처리
-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기준 중위소득, 변동사항 등 확인 철저
(※ 특히 전출입 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)
- 각 사업별 부족액 발생예방 및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전체 사업비 내에서 통합 집행 가능

[서식1호]

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신청서					처리기간	
					15일 이내	
신청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	급여지원 대상자와의 관계	(전화:)
	주소 (시설소재지)					
지급계좌	금융기관명		예금주		계좌번호	
임신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		
	주소 (시설소재지)					
	임신(예정)일	년	월	일		
출산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		
	주소 (시설소재지)					
	출산일	년	월	일		
<p>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 제7조 제3항의 기준에 의거 산전 산후 요양급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: _____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장·군수 귀하</p>						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인정보 활용 목적 :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. - 개인정보 수집 항목 : 인적사항 및 중복지원제외 항목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등 -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: 5년간 보유하고,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. - 위 개인정보의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					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
	구비서류 1. 임신자 신청자 -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출산자 신청자 - 출산 확인서 또는 출생신고서 3. 구비서류 첨부가 불가시 담당 공무원 사실확인서 4. 통장사본					

